



## 진료 상 과실이 있다거나 그 과실로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청구 기각된 사례

당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19가단5075965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거나 피고의 과실로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망인은 2018. 4. 25. 비의료적인 방법을 통하여 양측 가슴에 삽입한 이물질을 제거하고 싶다는 피고의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망인을 검진하고 혈액검사, 심전도 검사, 흉부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한 후 2018. 5. 8. 이물질제거술, 2018. 10. 11. 흡입술, 2018. 12. 4. 이물질제거술을 각각 시행하였다. 망인은 2019. 3. 19. 남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흡입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기 위하여 피고 의원을 방문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14:30경 망인을 수술실로 이동시켰다. 피고는 2019. 3. 19. 14:40경 망인에게 프로포폴 4cc를 투약한 이후 시간당 70cc의 속도로 주입되게 하였고, 14:50경 우측 가슴 부위에 국소마취를 하였는데, 15:04경부터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저하되기 시작하였다. 피고는 프로포폴 투약을 중단한 뒤 앰부배깅을 실시하였고, 15:05경 에피네프린 1앰플을 정맥투약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피고는 심폐소생술에 불구하고 망인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119 구급차를 통하여 망인을 상급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망인은 사망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망인의 연령, 그동안의 수술이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술 전 망인에 대하여 어떠한 검사를 시행할 것인지 결정했어야 하고, 그런 검사를 시행한 이후 프로포폴의 투약 등 이 사건 수술 시행 여부를 결정했어야 함에도 이를 해태한 채 망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수술로 나아가 결국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당 법무법인은 피고는 망인에 대해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기 전 필요한 검사를 모두 시행한 후 특별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수술을 시행하였다는 점, 피고가 망인을 진료하는 동안 유방암 발생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고, 의료진이 환자가 알리지 않은 타 의료기관의 진단내역까지 모두 알 수는 없는바, 망인이 알리지 않았거나 망인 스스로도 모르고 있어 발견되지 못한 악성종양에 대해서까지 피고가 확인해야 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기에 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과실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점, 수술 빈도 및 간격은 담당 주치의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데, 망인에게 이루어진 수술력을 보았을 때 피고의원에서의 수술 시행 간격이 지나치게 짧거나 빈도가 잦다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수술 중 프로포폴을 과량 투약한 사실이 없고, 부검 결과에서도 역시 치료농도 범위 내의 프로포폴이 검출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망인은 1949년생으로 고령이었고, 이에 더하여 유방의 악성종양, 심장의 동맥경화 등 급사를 유발할 수 있는 소견 및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소인이 다수 확인되었는바, 망인은 위와 같은 기왕증 및 체질적 소인의 영향으로 급성 심정지가 발생하여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른 것으로 망인의 사망과 피고의 진료 사이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하여 이 사건 수술 마취 후에 발생한 급성심장사로 추정하였을 뿐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망인의 오른쪽 유방에서 침윤성 유관암으로 추정되는 악성종양이 확인되었는데, 침윤성 유관암이 망인의 전신적 상태의 저하를 초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피고는 망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기 전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기본검사를 실시하였고, 망인의 경우 악성종양으로 인하여 전신상태의 저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망인에 대한 수술 전 기본검사 외의 검사가 필요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점, 망인에게 있었던 경도의 동맥경화, 악성종양 및 고령이 급성심장사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하거나 수술에 나아간 데에 어떠한 과실이 있거나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매년 프로포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고, 언론이나 학회 강의 등을 통해 예방이나 주의사항, 사고 발생을 대비한 준비물 및 사고발생시의 조치에 대해 정보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는 의료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호흡부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삽관 준비나 산소, 제세동기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잊지 말고, 사고 발생 시 빠른 119 신고와 함께 적절한 심폐소생술이 시행될 수 있도록 보조 인력에 대한 교육 역시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LK PARTNERS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익 변호사/의사

TEL. 02 565 9801

E-mail. [jibae@lkpartner.co.kr](mailto:jibae@lkpartner.co.kr)